

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9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11. .

제 출 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 정비(안 제13조제1항)
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의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서류 중복내용 삭제
-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정비(안 제13조제5항)
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산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 제한
- 수수료 근거규정 신설(안 제13조제6항 및 제7항)

3. 근거법규

- 가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 및 제48조
- 나.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5조 및 제26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- 라.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: 해당없음
- 마. 입법예고 : 2015. 9. 21. ~ 2015. 10. 12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통산업보존구역 안에”를 “전통산업보존구역에”로, “자(전통산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자(전통산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로, “다음 각 호의”를 “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개설 및 변경등록”을 “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”으로, “전통산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”을 “전통산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
2.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

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대규모점포등의 등록)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<u>전통상업보존구역</u> 안에 <u>중대규모점포</u>를 개설하려는 <u>자(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<u>다음 각 호의</u>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.</p> <p>1.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</p> <p>2. <u>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</u> ② ~ ④ (생략)</p> <p>⑤ 구청장은 <u>개설 및 변경등록(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(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)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</u>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<u>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</u>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.</p> <p><신 설> <신 설></p> <p>⑥ 구청장은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. <u>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</u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3조(대규모점포등의 등록) ① ----- ----- <u>전통상업보존구역에</u> ----- ----- <u>자(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----- -----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른 -----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----- ----- ----- <u>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</u> ---.</p> <p>1.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</p> <p>2. <u>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</u></p> <p>⑥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26조 제1항에 따른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.</p> <p><삭 제> <삭 제></p> <p>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1192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5. 11. 20.(금)
- 제출자 :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5. 11. 23.(월)
- 위원회심사 : 2015. 12. 8.(화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김종경 복지경제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 정비(안 제13조제1항)
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의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서류 중복내용 삭제
-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정비(안 제13조제5항)
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산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 제한
- 수수료 근거규정 신설(안 제13조제6항 및 제7항)

4. 근거법령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 및 제48조
-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5조 및 제26조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강기환)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